

##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

제정 2020. 10. 26 규칙 제1580호

제1조(「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안양시 재무회계 규칙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안양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안양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안양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”을 “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제5조 중 “「안양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하며, 제57조제2항 중 “「안양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88조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85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